

##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-160호

재검토기한 도래(2016. 6. 16.) 및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 훈령)에 따른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2017년 12월 04일

해양수산부장관

### 1. 개정이유

재검토기한 도래(2016. 6. 16.) 및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 훈령)에 따른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기 위함

### 2. 주요내용

가. 제3조(어선검사증서 등)에 대한 근거조항 수정

어선검사증서 등의 발급과 증인의 표시에 대한 근거조항은 제2조제6호가 아닌 제2조제7호로 단순 오기를 수정함

나. 재검토기한 재설정(안 제4조 신설)

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고시 재검토기한을 규정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## 어선 검사업무 등에 관한 대행업무 범위 일부개정고시안

어선 검사업무 등에 관한 대행업무 범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어선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1조”를 “「어선법」 제41조”로, “선박안전기술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”을 “선박안전기술공단”으로, “선급법인(이하 “선급법인”이라 한다)”을 “선급법인”으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공단 또는 선급법인”을 “「선박안전법」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(이하 “선급법인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법 제6조”를 “「어선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”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2조제6호”를 “제2조제7호”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(재검토기한) 해양수산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<제2017-000호, 2017.00.00>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<u>어선법</u>」(이하 “<u>법</u>”이라 한다)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「<u>선박안전법</u>」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<u>선박안전기술공단</u>(이하 “<u>공단</u>”이라 한다)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<u>선급법인</u>(이하 “<u>선급법인</u>”이라 한다)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대행업무의 범위) <u>공단</u> 또는 <u>선급법인</u>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선급법인의 경우 제2호 및 제6호의 업무는 제외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법</u> 제6조에 따른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는 어선의 검사 및 증서교부</li> <li>2. ~ 8. (생략)</li> </ol> <p>제3조(어선검사증서 등) 제2조제6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등의 발급과 증인의 표시는 다음에 따른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어선법</u>」 제41조----- ----- ----- ----- <u>선박안전기술공단</u> ----- ----- ----- <u>선급법인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대행업무의 범위) 「<u>선박안전법</u>」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<u>선박안전기술공단</u>(이하 “<u>공단</u>”이라 한다)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<u>선급법인</u>(이하 “<u>선급법인</u>”이라 한다)---. 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「<u>어선법</u>」(이하 “<u>법</u>”이라 한다) 제6조----- -----</li> <li>2. ~ 8. (현행과 같음)</li> </ol> <p>제3조(어선검사증서 등) 제2조제7호----- ----- -----.</p>

1.·2. (생략)

<신설>

부 칙

<제2013-166호, 2013.6.17.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재검토기한) 이 고시는 2016년 6월 16일까지 “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”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.

부 칙

<제2013-166호, 2013.6.17.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재검토기한) 이 고시는 2016년 6월 16일까지 “「훈령·예

1.·2. (현행과 같음)

제4조(재검토기한) 해양수산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----

<제2017-000호, 2017.00.00>

제1조(시행일) ----- 발령한 -----.

<삭제>

-----

<제2017-000호, 2017.00.00>

제1조(시행일) ----- 발령한 -----.

<삭제>

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”  
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.

부 칙

<제2013-166호, 2013.6.17.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재검토기한) 이 고시는 2016년 6월 16일까지 “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”  
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.

부 칙

<제2013-166호, 2013.6.17.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재검토기한) 이 고시는 2016년 6월 16일까지 “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”  
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.

-----

<제2017-000호, 2017.00.00>

제1조(시행일) ----- 발령한 -  
-.

<삭 제>

-----

<제2017-000호, 2017.00.00>

제1조(시행일) ----- 발령한 -  
-.

<삭 제>